

#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09.01.]

제1조의2(학칙의 체계) 학사과정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원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03.26.]

제2조(편제) 본 대학교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디자인대학, 미디어콘텐츠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International College, 바이오헬스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래커리어대학, 민석교양대학, Q College를 둔다. <개정 2006.10.01, 2007.11.19, 2008.09.12, 2009.09.01, 2014.01.01, 2015.03.01, 2016.05.13., 2016.12.16, 2018.02.01., 2018.08.06., 2018.12.14., 2019.09.01., 2020.03.13., 2020.12.11., 2021.03.26., 2022.04.15., 2022.06.10.>

제3조(학부, 정원, 별도법인, 민석도서관, 부설연구센터) ① 각 학부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0.1., 2007.11.19., 2008.9.12., 2009.9.1., 2010.3.1., 2010.6.01., 2010.9.1., 2011.6.1., 2011.9.1., 2012.9.1., 2013.3.1., 2014.4.11., 2015.4.24., 2016.5.13., 2017.6.2., 2018.8.6., 2018.12.14., 2019.3.29., 2019.4.30., 2020.3.13., 2020.4.24., 2020.12.11., 2021.03.26., 2022.01.21., 2022.04.15., 2023.04.10., 2023.05.03., 2024.04.12.>

② <삭제 2016. 12. 16>

③ 본 대학교 내에 별도 법인으로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

④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민석도서관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03.25.>

⑤ 부설연구센터로 방사선보건환경연구센터,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문화콘텐츠 가상융합기술 연

구소 (XCCT Labs), 일본연구센터, 임권택영화연구소, 엠비언트 인텔리전스 연구소, 퍼블릭디자인&라이팅연구소, 첨단아케이드게임지역혁신센터, 중국연구센터,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AI+X융합연구센터, 인공지능 모바일 포렌식 연구소, DSU-SDGs센터를 둔다. <개정 2007.11.19., 2010.03.01., 2012.09.01., 2014.01.01., 2015.06.15., 2017.09.01., 2017.12.01., 2018.09.01., 2020.12.11., 2021.12.03., 2022.06.10.>

⑥ 기타 부설 및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공유대학) 본 대학교는 신기술분야 및 지역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생 편의시설 공동운영 등을 위해 국내대학과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03.]

## 제 2 장 수업연한·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건축학과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03.26.>

② <삭제 2018.12.14.>

③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의 자격, 기간 및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4.>

제5조(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9.04.01.]

## 제 3 장 학년·학기·수업일수·휴업일

제6조(학년·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며, 이와는 별도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학기 휴가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 제2학기 : 9월 1일 - 이듬해 2월 말일

③ 제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학년과 학기의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제7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별 학점당 이수시간 내에서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 2항에 따른 학기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고, 계절학기를 두는 경우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3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점당 이수시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수업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개정 2017.09.01.>

② <삭제 2020.12.11.>

③ 매 학기 기말고사 직전 주간을 보강주간으로 운영 한다.

[제목개정 2020.12.11.]

제8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01., 2020.12.11.>

1. 하계 및 동계방학
2. 근로자의 날
3.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4. 개교기념일

② 휴가기간 및 임시휴업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14.09.1.>

## 제 4 장 입학·편입학·재입학

제9조(입학시기) ①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 및 편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 1에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11조(지원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기일 내에 수

2-1-1-4 제1장 대학

협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12조(입학사정) ① 입학지원자에 대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성적을 종합하여 사정하되, 그 일부를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적반영비율, 입학사정방법, 필기시험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2. 출신고교의 내신성적
  3. 출신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종합적 평가 <개정/신설 2023.06.09.>
  4. 대학별고사의 성적 <개정 2023.06.09.>
  5. 실기고사성적 <개정 2023.06.09.>
  6. 면접고사성적 등 <개정 2023.06.09.>
- ②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면접성적과 경력점수를 병과하여 사정한다. <개정 2017.09.01.> <개정/삭제 2023.06.09.>
- ③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09.01.>
- ④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제3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다. <신설 2017.09.01.>

제12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6.06.10>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6.10.>

[조문번호 변경 2018.12.14]

제13조(입학자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보증인) <삭제 2013.03.01>

제15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학교에서 해당 학년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6.03.25.>

③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다른 학부의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인원은 해당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준한다. <개정 2016.03.25.>

④ 본 대학교와 연계교육이 체결된 전문대학에서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졸업자)는 정원 외 3학년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인원은 해당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준한다. <개정 2016.03.25.>

⑤ 의료인력(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의 양성관련 모집단위와 동일한 전문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졸업자)는 정원 외 전형 중 해당 전형모집에서 3학년 또는 4학년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인원은 해당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준한다. <항 신설 2024.02.29.>

제16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총 정원에서 정원 내·외를 구분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단, 의료인 양성 관련학과는 모집단위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5 장 등록·수강신청

제17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의 납부로써 완료된다.

③ 학생은 해당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0.03.13.>

제18조(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강)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한 다음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1.>

② 수업의 1/3선 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9.1.>

③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 수업진행을 크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담당교수는 학생의 수강등록을 취소케 할 수 있다.

④ 전공배정 대상학년의 수강신청은 전공배정 이후에 실시하며,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2(자녀의 수강) ①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그 사실을 교무처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교수 및 지도교수는 가급적 해당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수 교과목의 경우에도 분반 구성 시 타 분반 강의를 선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4.01.]

## 제 6 장 전과 및 소속변경 <장명개정 2018.12.14., 2020.03.13., 2021.12.03.>

제20조(전과) ①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 중인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학과이동 및 전공변경)할 수 있다. 단, 편입생은 1개 학기 이상 이수 후 전과할 수 있다. <개정 2022.02.28., 2022.08.29., 2024.02.29.>

② 전과는 2회에 한하며, 매학기 초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06.09.>

③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0%까지 허용한다. <개정 2022.12.02.>

④ 다음 각 호의 전과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의 전과(전입) <개정 2022.02.28.>

2. 특기자로 입학한 자의 전과(전출)

3. 학문 특성에 따른 세칙으로 정한 학과의 전과 <개정 2022.02.28.>

⑤ 폐지된 전공의 복학생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2.29.>

[제목개정/전문개정 2021.12.03.]

제20조의2(소속변경) 입학 후 학사 구조개편 등에 의해 모집단위 또는 전공의 명칭변경·통합·분리 등 편제 변경이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기존 소속에서 변경된 편제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03.]

제21조(절차) ① 전과 및 소속변경 신청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한다. 단, 소속변경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3.13., 2021.12.03., 2022.08.29.>

② 전과를 희망하는 자가 허가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03.>

제22조(교과이수) ① 전과 및 소속변경을 한 학생은 변경된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득학점 및 성적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3.13., 2021.12.03.>

② <개정 2020.03.13.> <삭제 2021.12.03.>

[제목개정 2021.12.03.]

## 제 7 장 휴학·복학·퇴학·제적

제23조(일반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지도교수, 학과장 및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01., 2022.08.29.>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 중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 병역, 임신·출산·육아,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숙려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01., 2013.03.01., 2014.09.01., 2020.12.11.>

③창업휴학일 경우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2학기의 휴학기간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14.03.01.>

## 2-1-1-8 제1장 대학

④ 숙려휴학은 1회에 한하여 한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단 한학기 휴학으로 인하여 교과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두학기까지 연장할 수 도 있다. <신설 2014.09.01.>

제24조(군입대휴학) ①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군입대(지원입대 포함)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01>

②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복학) ① 휴학기간의 만료 및 휴학사유 소멸로 복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과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②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 1/3이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0.01>

제2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08.29.>

제27조(제적)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제적한다. 단, 세칙으로 정한 학적유지에 대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제적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09.01., 2022.12.02.>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는 자
2.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개정 2010.10.01., 2012.09.01., 2015.03.01., 2022.12.02.>
4. 이중 학적 자
5. <삭제 2019.06.07.>

## 제 8 장 교과·수업·학점·졸업

제28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9.01., 2017.03.01., 2018.09.01., 2020.03.13.>

② 교양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09.01., 2018.12.14.>



③ 전공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9.01.>

④ 일반선택 교과목은 전공 교과목 및 교양 교과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를 의미한다. <신설 2020.03.13.>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0.03.13.>]

⑤ 산학과목은 수강신청 이전에 산학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교과목 심사를 통하여 특정 전공의 전공 과목으로 개설 할 수 있다. <신설 2012.06.01.> <개정 2018.03.01.>

[제4항에서 이동 <2020.03.13.>]

제29조 (학점 및 수업) 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등은 수업시간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② 수업방법은 통상적인 출석수업,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0.12.10.>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사일정 계획에 없는 휴강을 할 경우 휴강시스템에 사유와 함께 입력하고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결과보고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1.>

제30조 <삭제 2020.03.13.>

제31조(과정 이수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단,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의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140학점으로 한다.

② 제4조 제1항 단서의 수업연한에 대해서는 제1항의 학점에 36학점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③ 과정별 이수학점은 연도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8.12.14.]

제32조(학기당취득학점) ① 매 학기 최대취득 학점은 1학년 18학점 그 외에는 19학점으로 한다. 단,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졸업학점이 140이상인 학과(전공)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당 최대 2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09.9.1., 2009.12.4., 2010.9.1., 2014.1.1., 2017.3.1., 2017.9.1., 2018.12.14., 2023.12.08.>

② 제1항의 학기당 최대취득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신설 2018.12.14.>

③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생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 및 소속대학과의 협

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08.>

제32조의2(수료학점) 각 학년의 인정학점은 다음각 호와 같다. 단, 제31조 제1항 및 세칙에 따라 130학점과 다른 졸업학점을 적용하는 경우 각 학년 인정학점은 학년별 균등분할 학점(소숫점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의 누적 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0.03.01., 2011.03.01., 2018.12.14., 2020.03.13., 2023.04.10.>

1. 제 1학년 : 33학점 <개정 2018.12.14.>
2. 제 2학년 : 65학점 <개정 2018.12.14.>
3. 제 3학년 : 98학점 <개정 2018.12.14.>
4. 제 4학년 : 130학점 <개정 2018.12.14.>
5. 제 5학년 : 165학점 <개정 2018.12.14.>

[조문번호 변경 2018.12.14]

제33조 (교육과정) ① 본 대학교는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목표에 연계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19., 2016. 11. 1, 2021.12.03.>

② 공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시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1.19.>

③ 우수한 보건의료정보관리 인력의 양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인증 프로그램’ 을 시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1.>

제34조(졸업·학위·학위취소)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과에 따라서는 학칙 시행세칙에 정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08.29., 2023.06.09.>

②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1)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서(별지서식 2)를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2011.3.1., 2012.3.1., 2015.3.1., 2017.12.1., 2020.3.13., 2020.12.11., 2021.12.03., 2022.02.28., 2022.06.10., 2023.06.09., 2023.10.10., 2024.02.29.>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03.01.>

⑤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에 따른 공동학위는 국내외 대학과의 협정 등에 따라 (별지서식 1) 외 협정 등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3.12.08.>

제34조의2(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21.12.03.>
-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5.03.01.>
- ④ 제3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3항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 <개정 2021.12.03.>

[본조 신설 2008.03.01.][조문번호 변경 2018.12.14]

제34조의3(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내외 타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2.04> <개정 2010.11.01., 2021.03.26.>

② 제1항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 대학교와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1.01., 2021.03.26.>

③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2.04> <개정 2010.11.01>

④ 국내·외 타 대학의 학위종별 분류가 (별표2)의 학위명칭과 다른 경우에 협정에 의해 별도의 학위명칭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1., 2021.03.26.>

⑤ 국내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정 및 협정에 따른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한다. <항 신설 2024.02.29.>

[조문번호 변경 2018.12.14.] [제목개정 2021.03.26.]

제34조의4(학사학위취득유예) 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 할 경우, 총장은 2학기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8.12.14.>

② 학사학위취득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유예 학기별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수강신청을 할 경우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5.03.01., 2018.12.14., 2021.12.03.>

[조문번호 변경 2018.12.14] [제목개정 2018.12.14.]

## 제 9 장 전공·부전공·복수전공·연계교육

제35조(전공학점)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제36조(부전공) ① 재학 중 주전공 이외의 전공에 개설된 소정의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여, 증서에 이를 표시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② 부전공의 이수는 당해 학과의 전공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9.>

③ <삭제 2020.12.11.>

[중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0.03.13.>]

④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및 건축학과는 타 학부(과) 및 전공 학생의 부전공 이수를 제한한다. <신설 2020.03.13.> <개정 2022.02.28., 2023.12.08.>

⑤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03.13.>]

제37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의 취득학점은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6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본전공과 복수전공에서 각 32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0.03.13.>

② <삭제 2020.12.11.>

③ 세칙으로 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및 건축학과는 타 학부(과) 및 전공 학생의 복수전공 이수를 제한한다. <신설 2020.03.13.> <개정 2022.02.28., 2023.12.08.>

[중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03.13.>]

④ 복수전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03.13.>]

제37조의2(교양학사학위트랙) ① 민석교양대학에 교양학사학위트랙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② 교양학사학위트랙은 (별표 6)과 같다. 단, 주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7.9.1. 2020.12.11., 2021.12.03., 2022.02.28., 2023.06.09.>

③ 교양학사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양학사학위트랙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8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해서 32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9.01., 2018.12.14.>

④ <삭제 2020.12.11.>

⑤ <삭제 2018.03.01.>

[본조신설 2016. 12. 16]

제37조의3(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한다.

②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9.01.]

제38조(연계교육) 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셀프브랜드개발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② <삭제 2010.09.01.>

③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의2(융합연계전공) ① 2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융합 연계한 융합연계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3.01.> <개정 2019.06.07.>

②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융합연계전공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2.03.01.> <개정 2019.06.07., 2020.03.13., 2020.12.11., 2022.02.28., 2022.06.10., 2023.10.10., 2024.02.29.>

③ <삭제 2018.03.01.>

[제목개정 2016.06.07.]

## 제 10 장 시험·성적

제39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40조(시험방법) 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구술 또는 논문 등에 의할 수 있다.

제41조(학점취득제한)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0.10.01>

제42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소속 학과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성적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08.29.>

제43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시험성적 및 과제물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01.>

제43조의2(자녀의 성적평가) ①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해당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의 자녀인 경우에는 최종 성적부여 시 출석, 과제제출, 시험 등 성적 산출근거를 학사운영실태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성적의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교수 본인의 자녀임에도 사전 미신고 또는 본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4.01.]

제44조(취득학점) 교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선정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를 낙제로 한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	0-59

제45조(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9.04.01.>

② ~~수서모집 등에 의해 입학이 확정된 자가 입학 전에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K-MOOC 등 교내외 온라인 강좌 플랫폼에 등재된 교과목 포함)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입학 후 10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단, 입학 전 미래커리어대학 개설 교과목을 이수하고, 미래커리어대학에 입학 을 하였을 경우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2020.03.13., 2022.12.02>~~

③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방송,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2.03.01.>

④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대 3학점 까지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4.03.01.>

⑤ 입학 전 또는 재학 중 산업체 등의 경력, 창업 등의 학습경험에 대해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2.14.> <개정 2019. 06. 07., 2023.06.09.>

⑥ 재학 중 K-MOOC 강좌 수강 후 이수증을 제출하면 채학기관 중 최대 6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11., 2022.12.02., 2023.06.09.>

[중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20.12.11.>]

⑦ 본조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편입생은 학점심사 인정 후 졸업에 필요한 잔존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외국 대학 및 첨단분야 국내 대학과의 공동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간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08., 2024.02.29.>

[제6항에서 이동 <2020.12.11.>]

제45조의2(학점인정 적용 및 방법) ① 제45조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제32조 제1항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45조에 의한 교과목 이수에는 통상적인 출석수업 및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03.13.]

제46조(학사경고) 졸업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단,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대해 1회에 한하여 학사경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1.01., 2015.03.01., 2021.12.03., 2022.12.02.>

## 제 11 장 포상·징계

제47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
  5. 학칙 기타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 제 12 장 등록금

제49조(등록금 납부)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금 통지) 등록금의 납부기일과 등록금액을 등록기간 전에 통지한다.

제51조(기타 납입금) 학술활동 및 연수 등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실비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52조(등록금 반환) ①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단, 당해년도 신입생의 최초학기 등록금은 개강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03.01., 2024.02.29.>

제53조 (등록금 심의 위원회) ①본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 어진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0.12.10>

②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10>

## 제 13 장 외국인 학생

제54조(외국인 특별생) 외국인으로서 본 학칙 ‘제 4장 입학·편입학·재입학’ 에 의하지 않고서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교 ‘외국인학생 입학 및 등록규정’ 에 의거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

제55조(증서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56조(외국인 특별생의 편입)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학력을 점검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 시킬 수 있다.

제57조(학칙적용)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 제 14 장 공개강좌

제58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59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사항은 개강 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60조(수강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15 장 교수회

제61조(교수회)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62조(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9.01>

제63조(소집)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4조(심의사항) ①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과, 편입학, 재입학포함),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29.>
2.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 제 16 장 교무위원회

제65조(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66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차실장, 학장 및 총장이 지정하는 부속기관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이외의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22.08.29.>

제67조(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8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03.13.>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03.>

2.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8.29.>
3.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환류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7 장 교원인사위원회

제69조(교원인사위원회) ①본 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그 외 교원인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와 관련 된 제반사항은 본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 제 18 장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70조(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제71조(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구성) 전조의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9 장 직 제

제72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 제 20 장 학생활동

제73조(총학생회 설치) ① 학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본교 교육이념 구현과 건전한 학

풍을 조성하고 진리탐구 및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동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본 대학교에 등록함과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73조의2(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비는 학생회 자율로 수납하되 수납된 회비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이 관리하며 수납,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하여는 학교의 승인과 지도를 받는다. <개정 2010.09.01., 2015.03.01., 2018.12.14.>

[조문번호 변경 2018.12.14]

제73조의3(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 ①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학생자치단체 선거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1.12.03.>

1.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7이상인 자 <개정 2009.9.1>
2. 4학기이상 정규학기 미만 등록한 학생 <개정 2018.11.02.>
3. 징계에 회부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선거권자의 10%이상 추천을 받은 학생(단, 총학생회장 정·부 선거시)
5. <개정 2008.1.30., 2010.09.01., 2015.03.01., 2018.12.14.> <삭제 2021.12.03.>

②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으로 선임된 자는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과 기타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 기타 간부는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무기정학이상)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제4항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회장의 잔여임기가 2/3이상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2/3미만일 때에는 차순위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03.>

[조문번호 변경 2018.12.14]

제74조(학생지도위원회) ①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제75조(학생활동 및 단체조직의 승인) ①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외의 활동을 금하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76조(학생활동) 학생활동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77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대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06.10.1.>
2.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개정 2006.10.1.>

제78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이 건전한 학풍을 지닌 창조적인 인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79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동아리활동에 관한 집회 <개정 2015.03.01.>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80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1조(차별)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제 21 장 시간제 학생 등록제

제82조(목적) 열린교육사회 체제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산업체근로자 및 일반인의 교육확대를 위하여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둔다.

제83조(자격 및 선발)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고등학교 성적, 면접고사 및 산업체 경력으로 선발한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2.29.>

제84조(학점신청) ① 시간제학생 등록 이수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2.29.>

②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제를 한다.

제85조(기타)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22 장 학교기업

제86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지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②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교기업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연계학과는 (별표 4)와 같다.

1. DSM&C(동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컴퍼니)

2. Animotions(애니모션)

제87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 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3.01>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 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88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②항,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23 장 자체평가

제89조(자체평가)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9.9.1>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1>

## 제24장 학칙개정

제90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의 필요성, 내용, 효과 및 시행예정

일에 관한 사항을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1.12.03.>

② 교무처는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 후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기획연구처로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21.12.03.>

③ 심의한 학칙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21.12.03.>

④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칙 개정안을 총장 결재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7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부로 통합되기 전에 학과에 재학 및 휴학중인 학생들은 입학당시 입학한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에 상경정보학부 국제관계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국제관계학부 국제통상학전공에 재적하고있는 자로 한다.
3. (동전)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에 상경정보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회계정보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상



경매스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동전) 이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야간)은 1999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되, 휴학 등으로 인하여 산업디자인학전공(야간)으로 입학한 자가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야간)으로 입학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할 할 경우에는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야간) 소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도시공학부는 건설공학부, 도시공학부 교통정보공학전공은 건설공학부 건축설계학전공, 시스템공학부는 정보시스템공학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생산디자인전공에 재적자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신설·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폐지된 전공의 재학생은 소속학부 인원으로 보고 폐지된 전공의 복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변경할수 있다.

3. (동전)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식품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식품생명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 또는 소속편제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전공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 및 전공소속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폐지된 전공의 재학생은 소속학부 인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4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구 학칙(별표3)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2004학년도부터 건축설계학전공의 수업년한이 5년으로 변동되므로 이전에 건축설계학으로 전공이 배정된 학생의 수업년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하며 원하면 5년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첨단기술연구센터의 명칭변경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설연구센터 중 디지털콘텐츠센터의 삭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전공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부(전공)의 명칭변경 또는 소속 편제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전공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 및 전공소속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광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관광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영상매스컴학부 애니메이션전공, 재적하고 있는 자는 디지털콘텐츠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영상매스컴학부 영화(Film&Video)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및 연극영화연기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직제규정 2008.1.30>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학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 제1항의 제5호 중 ‘학생취업복지처장’ 을 ‘학생복지처장’ 으로 한다.

⑯ - ㉑ 생략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장 제 85조 변경사항은 2008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 장 32조, 제20장 제72조의2 1항 1호 개정사항 및 제23장 88 조 신설사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직제규정 2010.09.01>

1.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학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1 제2항 및 제72조의2 제1항의 제5호 중 ‘학생복지처장’ 을 ‘학생취업복지처장’ 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2조, 제38조 개정사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 41 조에 변경에 따른 학사일정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학부, 정원, 별도법인, 부설연구센터)의 1항 별표1의 2014년 입학정원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14년 3월 1일 이전의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환경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디자인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부(전공)의 명칭변경 또는 소속 편제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전공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 및 전공소속의 재적생으로 본다.
3. (경과조치) ① 제27조(제적), 제46조(학사경고)의 학사경고 통산 4회 제적의 경우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3조 제5항은 인터랙티브 MR 융합 연구센터 규정 시행 일(2018년 1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조,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편제에 관한 경과조치) 단과대학 신설 및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편제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각체규정 2018.12.14.>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타 규정 개정) ① 학칙(3-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3조의2 제2항,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중 '학생처장' 을 '학생·취업지원처장' 으로 한다.

② - ⑥7 (생략)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학부, 정원, 별도법인, 부설연구센터)의 ① 항 별 표 1의 2020학년도 입학정원표는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규정의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자격) ①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제 2 학년 1학기 초, 제 3 학년 1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 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3.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4.2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첨단학과 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12.1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03.2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12.03.>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규정 제20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International Studies과 학위명 변경 적용례) International

Studies과 학위명 변경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3.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위명 변경 적용례)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위명 변경은 2022년 3월 1일 이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22.02.28.>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개정 2022.04.15.>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3조 제1항 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 광고홍보학과 재적생은 디자인대학 광고홍보학과 재적생으로, 창의공학계열 건축학과 재적생은 디자인대학 건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 방송영상학과 재적생은 미디어콘텐츠대학 방송영상학과 재적생으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 재적생은 각각 미디어콘텐츠대학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③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창의공학계열 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자공학과, 건축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④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및 회계세무학

전공 재적생은 각각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및 회계세무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⑤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관광계열 호텔경영학과 및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재적생은 각각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호텔경영학과 및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창의공학계열 메카트로닉스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재적생은 각각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기계공학과, 사회환경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2.06.10.>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및 부칙 제2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3조 제1항 편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상담심리학과 재적생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청소년상담심리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경찰행정학과 재적생은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3. (시행일 변경) 2022년 4월 15일 개정 학칙의 부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3조의 시행일을 2022년 9월 1일로 변경한다.
4. (시행일 변경에 따른 한시적 경과조치) 2023년 2월 28일까지 2022년 4월 15일 개정 학칙의 부칙 제3조의 '기계공학과'를 '메카트로닉스공학과'로, '사회환경공학과'를 '토목환경공학과'로 각각 변경하여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2.08.2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12.0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입학 전 학점인정 범위 확대 적용례) 이 개정규정 제45조 제2항은 개정 후 입학자라면 개정 전 이수한 학점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03.03.>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4.10.>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3조 (학부, 정원, 별도법인, 부설연구센터)의 별표 1의 2024학년도 입학 정원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24학년도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인공지능응용학과는 2025학년도까지 존속하며, 동 학과 재적생은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제20조의2에 따라 컴퓨터공학부 소속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뮤지컬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자공학과, 사회환경공학과, 바이오헬스융합대학 화장품·신소재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재적생은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뮤지컬엔터테인먼트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전기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바이오헬스융합대학 화장품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찰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3.05.03.>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06.09.>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5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0.10.>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2.08.>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2.29.>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04.12.>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3조 (학부, 정원, 별도법인, 부설연구센터)의 별표 1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변경) ① 2022년 4월 15일 개정 학칙의 부칙 제3조 및 2023년 4월 10일 개정 학칙의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과가 변경된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소속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의 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소속을 유지한 경우 제20조의2에 따라 다시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부 칙 <개정 2024.04.17.>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학정원표** [전문개정 2020.03.13.] <개정 2020.04.24., 2020.12.11., 2021.03.26., 2022.01.21., 2022.04.15., 2022.06.10., 2023.03.03., 2023.04.10., 2023.05.03., 2024.04.12., 2024.04.17.>

대학	모집단위	계열	2026학년도 모집정원	2025학년도 모집정원	2024학년도 모집정원	2023학년도 모집정원
임권택영화 예술대학	영화과	예체능	44	44	44	40
	뮤지컬엔터테인먼트과	예체능	20	20	20	-
	뮤지컬과	예체능	-	-	-	25
	연기과	예체능	30	30	30	30
	소계		94	94	94	95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예체능	200	200	200	200
	(시각디자인전공)	예체능	(60)	(60)	(60)	(60)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예체능	(60)	(60)	(60)	(60)
	(제품인터랙션디자인전공)	예체능	(40)	(40)	(40)	(40)
	(환경디자인전공)	예체능	(40)	(40)	(40)	(40)
	패션디자인학과	예체능	50	50	50	42
	광고홍보학과	인문사회	56	56	56	48
	건축학과	공학	40	40	42	42
소계		346	346	348	332	
미디어 콘텐츠대학	방송영상학과	인문사회	95	95	95	88
	디지털콘텐츠학부	예체능	220	220	220	193
	(게임학과)	예체능	(70)	(70)	(70)	(65)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예체능	(100)	(100)	(100)	(88)
	(웹툰학과)	예체능	(50)	(50)	(50)	(40)
	소계		315	315	315	281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디지털금융학과	공학	20	20	20	-
	컴퓨터공학부	공학	145	145	170	195
	(소프트웨어학과)	공학	(40)	(40)	(50)	(60)
	(정보보안학과)	공학	(25)	(25)	(40)	(35)
	(컴퓨터공학과)	공학	(80)	(80)	(80)	(80)
	(인공지능응용학과)	공학	-	-	-	(20)
	스마트모빌리티학부	공학			-	-
	(전기전자공학전공)	공학			-	-
	(로봇스전공)	공학	50	50	-	-
	(이차전지전공)	공학			-	-
	(수소에너지전공)	공학			-	-
	건축공학과	공학	25	25	-	-
	전자기계공학부	공학	-	-	-	55
	창의공학부	공학	-	-	80	-
	(전기전자공학과)	공학	-	-	(20)	-
	(전자공학과)	공학	-	-	-	(35)
	(기계공학과)	공학	-	-	(15)	(20)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공학	-	-	-	52
	(건축공학과)	공학	-	-	(30)	(32)
	(토목공학과)	공학	-	-	(15)	-
(사회환경공학과)	공학	-	-	-	(20)	
*Mechan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학과	공학	-	-			
소계		240	240	270	302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경영학부	인문사회	-	-	110	110
	(경영학전공)	인문사회	-	-	(80)	(80)
	(회계세무학전공)	인문사회	-	-	(30)	(30)
	국제통상물류학부	인문사회	-	-	56	64

대학	모집단위	계열	2026학년도 모집정원	2025학년도 모집정원	2024학년도 모집정원	2023학년도 모집정원
	(국제통상학과)	인문사회	-	-	(36)	(32)
	(국제물류학과)	인문사회	-	-	(20)	(32)
	외국어학부	인문사회	-	-	70	80
	(영어학과)	인문사회	-	-	(20)	(25)
	(일본어학과)	인문사회	-	-	(30)	(30)
	(중국어학과)	인문사회	-	-	(20)	(25)
	관광학부	인문사회	-	-	84	90
	(호텔경영학과)	인문사회	-	-	(50)	(50)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인문사회	-	-	(34)	(40)
	소계		-	-	320	344
글로벌관광 대학	호텔경영학과	인문사회	160	160	-	-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인문사회			-	-
	스포츠투레지학과	예체능			-	-
	영어학과	인문사회			-	-
	일본어학과	인문사회			-	-
	중국어학과	인문사회			-	-
	소계				160	160
International College	캠퍼스아시아학과	인문사회	20	20	20	20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학과	인문사회	-	-	-	-
	*Korean Language and Business학과	인문사회	-	-	-	-
	*Computer Science학과	공학	-	-	-	-
	*Game Development학과	공학	-	-	-	-
	*Animation학과	예체능	-	-	-	-
	*Film and Visual Effects학과	예체능	-	-	-	-
	*Digital Design학과	예체능	-	-	-	-
	*Cultural Contents Business Management학과	인문사회	-	-	-	<del>20</del>
	소계		20	20	20	20
바이오헬스 융합대학	보건행정학과	인문사회	36	36	42	42
	임상병리학과	자연과학	40	40	40	40
	간호학과	자연과학	100	100	90	90
	치위생학과	자연과학	40	40	40	40
	방사선학과	자연과학	40	40	40	40
	작업치료학과	자연과학	40	40	40	40
	운동처방학과	예체능	50	50	55	50
	체육학과	예체능	50	50	55	50
	식품화장품학부	자연과학	-	-	-	70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	30	30	35	(40)
	화장품학과	공학	-	-	20	-
	화장품·신소재학과	공학	-	-	-	(30)
		소계		426	426	457
사회과학 대학	사회복지학부	인문사회	-	-	100	102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	-	-	(65)	(62)
	(청소년상담심리학과)	인문사회	-	-	(35)	(40)
	경찰학과	인문사회	-	-	60	-
	경찰행정학과	인문사회	-	-	-	56
경영 사회과학 대학	경영학부	인문사회	95	95	-	-
	(경영학전공)	인문사회	(70)	(70)	-	-
	(회계세무학전공)	인문사회	(25)	(25)	-	-

대학	모집단위	계열	2026학년도 모집정원	2025학년도 모집정원	2024학년도 모집정원	2023학년도 모집정원
	국제통상물류학부	인문사회	50	50		
	(국제통상학과)	인문사회	(25)	(25)	-	-
	(국제물류학과)	인문사회	(25)	(25)	-	-
	사회복지학부	인문사회	90	90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	(60)	(60)	-	-
	(상담심리치료학과)	인문사회	(30)	(30)	-	-
	경찰학과	인문사회	60	60	-	-
	소계		295	295	160	158
미래커리어 대학	ICT융합공학과	공학	20	20	20	20
	사회안전학과	인문사회	-	-	20	20
	안전관리학과	인문사회	20	20	-	-
	사회복지상담학과	인문사회	20	20	20	20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예체능	20	20	20	20
	스포츠레저산업학과	예체능	15	15	15	10
	실용콘텐츠창작학과	인문사회	15	15	15	10
	소계		110	110	110	100
민석 교양대학	자유전공학부	인문사회	88	88	-	-
	소계		88	88	-	-
	총계		2,094	2,094	2,094	2,094

- 주) 1. \*는 정원외(외국인) 모집이며, Cultural Contents Business Management학과는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위과정임  
 2. 입학전형에 따라 모집단위를 통합 또는 분할하여 모집할 수 있음  
 3. 국립부경대학교 공동학과 '디지털금융학과' 교육부 승인 시 2024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속으로 하고, 모집정원은 20명으로 하며, 게임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에서 각 10명씩 감축함(교육부 승인 일자 기준으로 자동 개정하고 불승인 시 원안대로 하며, 주) 3.은 교육부 통보 일자 기준으로 삭제토록 함)  
 3. 2025학년도 모집정원 중 바이오헬스융합대학 '간호학과' 10명 증원에 대하여 교육부 불승인 또는 승인인원이 줄어들 경우, 2025-2026학년도 모집정원은 100명에서 교육부 통보인원으로 하며, 우선순위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의 정보보안학과에 최대 5명 증원 후, 민석교양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최대 5명 증원함(교육부 통보 일자 기준으로 자동 개정 하며, 주) 4.은 교육부 통보 일자 기준으로 삭제토록 함)  
 4. 글로벌관광대학 및 민석교양대학 자유전공학부의 계열분류는 전공을 확정하기 전까지 인문사회계열로 본다.

대학/계열	모집단위	계열	2022학년도 모집정원	2021학년도 모집정원	2020학년도 모집정원	2019학년도 모집정원	2018학년도 모집정원	2017학년도 모집정원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글로벌경영학부	인문사회	110	160	160	180	200	200
	(경영학전공)	인문사회	(80)	(110)	(110)	(180)	(200)	(160)
	※(글로벌금융전공)	인문사회	-	-	-	-	-	(40)
	(회계세무학전공)	인문사회	(30)	(50)	(50)	-	-	-
	외국어계열	인문사회	93					
	(영어학과)	인문사회	(27)	40	50	50	50	50
	(일본어학과)	인문사회	(30)	40	50	50	50	50
	(중국어학과)	인문사회	(36)	50	60	60	60	60
	국제통상물류계열	인문사회	72					
	(국제통상학과)	인문사회	(36)	50	60	-	-	-
	(국제물류학과)	인문사회	(36)	50	60	-	-	-
	※국제통상물류학부	인문사회	-	-	-	130	130	130
	※(국제통상학전공)	인문사회	-	-	-	(70)	(70)	(70)
	※(국제물류학전공)	인문사회	-	-	-	(60)	(60)	(60)
소계			275	390	440	470	-	-
International College	캠퍼스아시아학과	인문사회	20	-	-	-	-	-
	※동아시아학과	인문사회	-	20	20	20	20	20
	※International Studies과	인문사회	-	-	20	20	20	20
	소계		20	20	40	40	-	-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컴퓨터공학계열	공학	200	200	-	-	-	-
	(컴퓨터공학과)	공학	(70)	(60)	60	-	-	-
	(소프트웨어학과)	공학	(60)	(60)	40	-	-	-
	(인공지능응용학과)	공학	(30)	-	-	-	-	-
	※(정보통신공학과)	공학	-	(40)	40	-	-	-
	(정보보안학과)	공학	(40)	(40)	40	-	-	-
	※컴퓨터공학부	공학	-	-	-	190	190	190
	디지털콘텐츠계열	예체능	170	-	-	-	-	-
	(게임학과)	예체능	(60)	-	-	-	-	-
	※게임학과	공학	-	60	60	-	-	-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예체능	(80)	80	80	-	-	-
	(웹툰학과)	예체능	(30)	-	-	-	-	-
	※디지털콘텐츠학부	공학	-	-	-	140	140	140
소계		370	340	320	330	-	-	
바이오헬스 융합대학	※이공계열	공학	-	120	-	-	-	-
	보건행정학과	인문사회	42	40	-	-	-	-
	임상병리학과	자연과학	40	40	-	-	-	-
	간호학과	자연과학	80	80	-	-	-	-
	치위생학과	자연과학	40	40	-	-	-	-
	방사선학과	자연과학	40	40	-	-	-	-
	작업치료학과	자연과학	40	40	-	-	-	-
	식품화장품계열	자연과학	80	-	-	-	-	-
	(화장품신소재학과)	공학	(40)	-	-	-	-	-
	※신소재화학공학과	공학	-	(40)	-	-	-	-
	※바이오제약공학과	공학	-	(40)	-	-	-	-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	(40)	(40)	-	-	-	-
	운동처방학과	예체능	50	40	-	-	-	-
	체육학과	예체능	50	40	-	-	-	-
소계		462	480	-	-	-	-	

대학/계열	모집단위	계열	2022학년도 모집정원	2021학년도 모집정원	2020학년도 모집정원	2019학년도 모집정원	2018학년도 모집정원	2017학년도 모집정원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예체능	180	180	180	180	180	180
	(시각디자인전공)	예체능	(50)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예체능	(50)					
	(제품인터랙션디자인전공)	예체능	(40)					
	(환경디자인전공)	예체능	(40)					
	※(디자인학전공)	예체능	-	-	-	(180)	(180)	(180)
	패션디자인학과	예체능	40	40	40	40	40	40
	소계		220	220	220	220	220	220
임권택영화 예술대학	영화과	예체능	40	40	40	40	40	40
	뮤지컬과	예체능	30	30	30	30	30	30
	연기과	예체능	30	30	30	30	30	30
	소계		100	100	100	100	100	100
미디어커뮤니 케이션계열	방송영상학과	인문사회	82	80	80	-	-	-
	광고홍보학과	인문사회	42	40	40	-	-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인문사회	-	-	-	120	120	120
	※(방송영상전공)	인문사회	-	-	-	(80)	(80)	(80)
	※(광고PR전공)	인문사회	-	-	-	(40)	(40)	(40)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계열	인문사회	102					
	(사회복지학과)	인문사회	(62)	-	-	-	-	-
	(청소년상담심리학과)	인문사회	(40)	-	-	-	-	-
	※사회복지학부	인문사회	-	100	100	110	110	110
	※(사회복지학전공)	인문사회	-	(60)	(60)	(70)	(70)	(70)
	※(청소년상담심리전공)	인문사회	-	(40)	(40)	(40)	(40)	(40)
관광계열	관광계열	인문사회	90					
	(호텔경영학과)	인문사회	(50)	-	-	-	-	-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인문사회	(40)	-	-	-	-	-
	※관광학부	인문사회	-	140	150	150	150	150
	※(호텔경영학전공)	인문사회	-	(50)	(50)	(50)	(50)	(50)
	※(관광경영학전공)	인문사회	-	(50)	(50)	(50)	(50)	(50)
	※(이벤트/컨벤션학전공)	인문사회	-	(40)	(50)	(50)	(50)	(50)
창의공학계열	※이공계열	공학	-	301	-	-	-	-
	창의공학계열	공학	175					
	(전자공학과)	공학	(36)	-	-	-	-	-
	※융합전자공학과	공학	-	(80)	-	-	-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공학	(36)	(80)	-	-	-	-
	(건축공학과)	공학	(36)	(60)	-	-	-	-
	(토목환경공학과)	공학	(25)	(41)	-	-	-	-
(건축학과)	공학	(42)	(40)	-	-	-	-	
	경찰행정학과	인문사회	50	40	40	40	40	40
	International Studies과	인문사회	10	20	-	-	-	-
※보건의료 계열	※보건행정학과	인문사회	-	-	40	40	40	40
	※임상병리학과	자연과학	-	-	40	40	40	40
	※간호학과	자연과학	-	-	80	60	60	60
	※치위생학과	자연과학	-	-	40	40	40	40
	※방사선학과	자연과학	-	-	40	40	40	25
	※작업치료학과	자연과학	-	-	40	40	40	40
※스포츠과학 계열	※운동처방학과	예체능	-	-	40	-	-	-
	※체육학과	예체능	-	-	40	-	-	-

대학/계열	모집단위	계열	2022학년도 모집정원	2021학년도 모집정원	2020학년도 모집정원	2019학년도 모집정원	2018학년도 모집정원	2017학년도 모집정원
※이공대학	※레프츠과학부	예체능	-	-	-	90	90	90
	※(운동처방전공)	예체능	-	-	-	(40)	(40)	(40)
	※(레저스포츠전공)	예체능	-	-	-	(50)	(50)	(50)
	※(경호전공)	예체능	-	-	-	40	40	40
※이공대학	※융합전자공학과	공학	-	-	80	-	-	-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공학	-	-	80	-	-	-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공학	-	-	-	160	160	160
	※건축공학과	공학	-	-	60	-	-	-
	※토목환경공학과	공학	-	-	60	-	-	-
	※건축학과	공학	-	-	40	-	-	-
	※건축토목공학부	공학	-	-	-	160	160	160
	※(건축공학전공)	공학	-	-	-	(60)	(60)	(60)
	※(토목공학전공)	공학	-	-	-	(60)	(60)	(60)
	※(건축설계학전공)	공학	-	-	-	(40)	(40)	(40)
	※신소재화학공학과	공학	-	-	45	-	-	-
	※생명화학공학과	공학	-	-	40	-	-	-
	※식품영양학과	자연과학	-	-	40	-	-	-
	※화학공학부	공학	-	-	-	125	125	-
	※(신소재화학공학전공)	공학	-	-	-	(45)	(45)	-
	※(생명화학공학전공)	공학	-	-	-	(40)	(40)	-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	-	-	-	-	-	140
	※(식품영양학전공)	자연과학	-	-	-	(40)	(40)	(40)
	※(신소재공학전공)	공학	-	-	-	-	-	(40)
	※(에너지환경공학전공)	공학	-	-	-	-	-	(40)
※(글로벌생명공학전공)	공학	-	-	-	-	-	(20)	
	소계		-	-	445	-	-	-
미래커리어 대학	ICT융합공학과	공학	20	-	-	-	-	-
	※ICT융합공학부	공학	-	10	10	-	-	-
	※미래ICT융합학부	공학	-	-	-	10	-	-
	사회안전학과	인문사회	20	-	-	-	-	-
	※사회안전학부	인문사회	-	10	10	-	-	-
	※경찰사법학부	인문사회	-	-	-	10	-	-
	사회복지상담학과	인문사회	20	-	-	-	-	-
	※실버컨설팅학과	인문사회	-	10	10	-	-	-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예체능	20	10	10	-	-	-
	스포츠레저산업학과	예체능	10	-	-	-	-	-
	실용콘텐츠창작학과	인문사회	10	-	-	-	-	-
	소계	100	40	40	20	-	-	
	총계	2,098	2,311	2,375	2,435	2,435	2,435	

주) 1. ※ 해당명칭으로 모집을 중단하는 모집단위 및 하위단위

2. ( ) 모집단위 내 하위단위

3. 2021학년도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 421명



**[별표 2] 학사학위 수여표** <개정 2010.12.10., 2011.03.01., 2012.03.01., 2015.03.01., 2017.03.01., 2020.03.13., 2020.12.11., 2021.12.03., 2022.02.28., 2022.06.10., 2023.03.03., 2023.04.10., 2023.05.03., 2023.06.09., 2023.10.10., 2024.02.29.>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	비고
경영학사	경영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인터넷경영정보학전공, 금융선물보험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회계정보학전공, 회계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회계세무학전공,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학과, Cultural Contents Business Management학과	
문학사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영상문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영상문예창작전공, 미디어창작전공, 방송영상학과, 광고홍보학과, International Studies과, 청소년상담심리학과	
국제통상학사	국제통상학전공, 국제통상학과	
동아시아학사	동아시아학과, 캠퍼스아시아학과	
물류학사	국제물류학전공, 물류유통학전공, 국제물류학과	
국제학사	국제관계학전공, 국제지역비즈니스학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전공, 공공사회복지전공, 임상사회사업전공, 실버컨설팅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관광학사	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호텔경영학과, 관광경영컨벤션학과	
경찰학사	경찰행정학과, 사회안전학부, 경찰사법학부, 사회안전학과, 경찰학과	
임상병리학사	임상병리학과	
보건행정학사(보건의료정보관리 심화)**	보건행정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이학사	방사선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작업치료학사	작업치료학과	
공학사	전자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인터넷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4년제), 에너지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글로벌생명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신발지식공학전공, 게임전공, 디지털영상제작전공, 디지털프로덕션전공, 애니메이션전공,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안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융합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 신소재화학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ICT융합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전공, 생명화학공학전공, 미래ICT융합공학부, 바이오제약공학과, 화장품신소재학과, ICT융합공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사회환경공학과, Computer Science학과, Game Development학과, 디지털금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화장품학과,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디지털콘텐츠학사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웹툰학과, 실용콘텐츠창작학과, XR콘텐츠융합연계전공	
공학사(토목공학심화)*	토목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학사	건축설계학전공(5년제), 건축학과	
디자인학사	디자인학전공, 산업디자인학전공, 프로덕트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비주얼디자인학전공, 환경디자인학전공, 스페이스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과,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제품인터렉션디자인전공, Digital Design학과, ESG디자인전공	
체육학사	운동처방학전공, 건강스포츠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경호정보전공, 운동처방학과, 체육학과, 시니어운동처방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예술학사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와, 영화&비주얼이펙트융합연계전공, Animation학과, Film and Visual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	비고
교양학사	Effects학과, 뮤지컬엔터테인먼트과 공공서비스, 문화콘텐츠, 인간과인공지능, 융합커반교양, ESG경영, 지역문화콘텐츠, 한국어, 언어와 논리, 미래사회가치, 자유학예	
한국어·비즈니스학사	한국어·비즈니스연계전공, Korean Language and Business학과	
인공지능공학사	AI공학융합연계전공, 인공지능로봇융합연계전공	
빅데이터학사	빅데이터융합연계전공	
인공지능콘텐츠학사	AI콘텐츠융합연계전공	
사이버경찰보안학사	사이버경찰보안융합연계전공	
디자인공학사	AI경험디자인융합연계전공	
IT창업학사	ITPreneurship융합연계전공	
SW융합학사	영어SW융합연계전공, 일본어SW융합연계전공, 중국어SW융합연계전공	
융합학사	글로벌 K-컬처 영화/드라마융합연계전공, 글로벌 K-컬처 웹툰애니메이션융합연계전공, 글로벌 K-컬처 음악/공연융합연계전공, 글로벌 K-컬처 문학/웹소설융합연계전공	
스마트 국제물류 경영학사	스마트 국제물류전공	
스마트 항만물류 공학사	스마트 항만물류전공	
클린에너지 공학사	클린에너지전공	
평생교육학사	평생교육건설전공	
문학사/이학사/공학사 /예술학사 중 택1	자기설계융합전공	

- 주) 1)\*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시 학위명칭임  
 2)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공(학과)에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미이수시 공학사로 표기  
 3)\*\*는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시 학위명칭임  
 4)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공(보건행정학과)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인증프로그램 미이수시 보건행정학사로 표기  
 5) 별표1. 입학정원표의 주) 3.에 근거하여 디지털금융학과는 공학사로 하며, 교육부 승인여부에 따라 자동 개정 후 주) 5)은 삭제토록 함.

[별표 3]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명)		
			주간	야간	계
인문	e-비즈니스학부	인터넷경영정보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회계정보학전공	200		320
		인터넷경영정보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120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디지털방송전공 광고PR전공 Film & Video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미디어창작전공	200		200
	국제관계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국제지역학전공	160		240
		국제통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80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240		360
영어전공 일본어전공 중국어전공			120		
소 계			760	320	1,080
자연	정보시스템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160		240
		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80	
	인터넷공학부	컴퓨터&인터넷공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240		360
		컴퓨터&인터넷공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120	
	건설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120		200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80	
응용공학부	환경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120		240	
	환경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신발지식공학전공		120		
소 계			640	400	1,040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명)		
			주간	야간	계
예·체능	디지털디자인학부	프로덕트디자인학전공 비주얼디자인학전공 스페이스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멀티미디어디자인학전공	240		280
		비주얼디자인학전공		40	
	레포츠과학부	건강스포츠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정보전공	120		120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연극전공	80		80
소 계			440	40	480
총 계			1,880	760	2,640

**[별표 4]**

학교기업명	연계학부(전공)	사업종목
DSM&C (동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컴퍼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방송영상물 및 영화제작
Animotions(애니모션)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애니메이션 제작

**[별표 5] (융합)연계전공** <개정 2020.03.13., 2020.12.11., 2022.02.28., 2022.06.10., 2023.03.03., 2023.10.10.>

(융합)연계전공	참여학부(전공)	학위
한국어·비즈니스	글로벌경영학부, 동아시아학과	한국어·비즈니스학사
AI공학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컴퓨터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인공지능공학사
빅데이터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컴퓨터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빅데이터학사
AI콘텐츠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소프트웨어학과, 게임학과, 컴퓨터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인공지능콘텐츠학사
사이버경찰보안	경찰행정학과, 정보보안학과, 컴퓨터공학부	사이버경찰보안학사
인공지능로봇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AI공학융합연계전공, AI콘텐츠융합연계전공	인공지능공학사
AI경험디자인	디자인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AI콘텐츠융합연계전공	디자인공학사
영화&비주얼어펙트	영화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예술학사
ITPreneurship	경영학전공, 컴퓨터공학과	IT창업학사
XR콘텐츠	게임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방송영상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웹툰학과	디지털콘텐츠학사
영어SW	영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AI공학융합연계전공, 빅데이터융합연계전공	SW융합학사
일본어SW	일본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AI공학융합연계전공, 빅데이터융합연계전공	SW융합학사
중국어SW	중국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AI공학융합연계전공, 빅데이터융합연계전공	SW융합학사
글로벌 K-컬처 영화/드라마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과	융합학사
글로벌 K-컬처 웹툰애니메이션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과	융합학사
글로벌 K-컬처 음악/공연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과	융합학사
글로벌 K-컬처 문학/웹소설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영화과	융합학사
스마트 국제물류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	스마트 국제물류 경영학사
스마트 항만물류	국제통상학과, 국제물류학과	스마트 항만물류 공학사
스마트 해양모빌리티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정보보안학과	공학사
클린에너지	-	클린에너지 공학사
평생교육컨설팅	사회복지상담학과, 스포츠레저산업학과	평생교육학사
ESG디자인	시각디자인전공, 환경디자인전공,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제품인터랙션디자인전공, 패션디자인학과, 광고홍보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디자인학사
자기설계융합전공	소속전공을 포함한 3개 학과 이상의 전공교과목으로 융합전공 설계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예술학사 중 택1

**[별표 6] 교양학사학위트랙** <개정 2019.09.01., 2020.04.24., 2020.12.11., 2022.02.28., 2023.06.09.>

학위종별	교양학사학위트랙	비고
교양학사	공공서비스, 지역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한국사	
	인간과인공지능, 언어와 논리	
	융합기반교양, 미래사회가치	
	ESG경영, 자유학예	

(별지서식 1) <개정 2022.02.28.>

제 호

## 학 위 증

성 명 :  
19 년 월 일생

전공 : ( 학사)  
전공 : ( 학사)  
부전공 :

위 사람은 본 대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 년 월 일

동 서 대 학 교 총 장

교육부학위등록번호 : 동서대 (학)

- ※ 학부 : 학부, 계열, 대학
- ※ 전공 : 전공, 부전공, 학과, 학부

(별지서식 2)

제 호

## 수료증

성명 :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부 전공 제 학년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19 년 월 일

동 서 대 학 교 총 장  
OO 박사 0 0 0

인